

# 이 유

## 1.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의 주장

- 현재 아파트에서 2009년 입주할 때부터 거주 중으로 8년째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크게 소음에 불편 없이 지냈는데, 2016년 11월경부터 윗 층 세대가 이사 온 후부터 매일 반복되는 어른 발소리와 어린이 뛰는 소리, 새벽, 밤 구분 없이 물건을 떨어뜨리고 쿵쿵대는 소리가 너무 심함
- 경비실, 경찰서, 시청(공동주택과) 중재 등을 통해 여러 번 항의하였으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인적인 연락은 아예 거부하며 발걸음 주의, 매트 추가설치, 실내화 착용 등의 개선을 위한 협조 및 노력이 아예 없는 상태임
- 특히 아침 7시 전후로 거실과 방을 들락 하면서 쿵쿵대는 발소리는 수면을 방해하고 아침부터 화를 치밀게 하는 제일 큰 문제점이라 바쁜 출근준비 중에도 아침에 인터폰, 관리실을 통해 신고하였으나 1년이 다 되어가도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음
- 아파트 생활에서 항상 다른 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최소한 아침, 저녁시간에 특히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임
- 윗집은 아이가 종일 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리미리 못하게 막지 않고 쿵쿵 어른 발소리에 매트를 추가로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등의 아래층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피해로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가 1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관리실, 경찰서, 서울시청 등의 중재가 안되는 상황이므로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를 신청함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거주지에는 30mm 두께의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가 거주면적 전체에 이사 때 부터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간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 전부가 수면 중인 시간대였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의 형태와 발생 시각 상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주거에서 해당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함
- 피신청인이야말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주거의 소음이라 단정 짓고 새벽과 밤 시간을 넘나들며 인터폰과 경비, 경찰을 막무가내로 부르는 행위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한 상태임

## 2.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현황

- 당사자 주거공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단위 공동주택(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정온한 환경이며, 신청인은 위집에서의 물건 떨어지는 소리, 쿵쿵대는 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임

### 나. 당사자 주거 건물 현황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모 : 지상 3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 2009.7.14.

### 다. 층간소음 상담센터 방문상담 결과

- 상담기관 : 서울시층간소음상담실
- 방문일시 : 2017. 7.13(목) 16:20~17:50

- 상담내용 : 윗층 및 아래층에 공동체 생활의 소음을 줄이는 배려와 이해의 마음을 갖는 생활 당부

## 라. 현장조사 시 피해주장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의 발생 형태
  - 문닫는 소리(방문)
  -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
  -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 화장실내에서 아이들 우는소리 및 씻는 소리
- 신청인이 느끼는 피해내용
  - 소음피해 및 수면방해
    - 아침 시간에 윗층의 집안 전체에서 울리는 쿵쿵대는 소리 및 무엇인가 떨어뜨리는 소리에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극심하여 심한 스트레스 및 수면방해로 인한 심신의 피로감이 심함
    - 저녁에는 가끔씩 출입문 닫히는 소리 및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되어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임
- 피신청인의 소음저감 주장 내용
  - 소음저감 노력
    - 문 닫는 소리(방문) : 방문은 거의 닫지 않고 생활하고 있음
    - 발걸음 소리 : 거실 전체 및 아이들 방에는 두께 3cm의 매트 깔아서 충격음 및 소음을 줄이는데 주의를 하고 있음
    -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 아이들(2살, 4살) 장난감은 거실에 배치하여 떨어질 때 매트 위라서 소음을 줄이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어떠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음
  - 생활패턴

- 아침 7시 30분경에 가족이 기상하며, 큰아이(4살) 어린이집 등원준비 및 출근을 준비하여 9시경에 집에서 나옴
- 둘째(2살)는 집에서 부모와 지내고 있으며, 주로 거실에서 놀이와 생활을 하고 지냄
- 저녁에는 일찍 취침하며, 음주는 가끔 하지만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음으로 쿵쿵대는 발걸음은 하지 않음, 대문 닫는데도 조심스럽게 함
- 아이들을 주의나 혼낼 때 아래층 아저씨를 내세워 이야기 하면 효과가 좋으나, 아이들이 그 만큼 현재 무서워하고 본인 또한 주의 깊게 행동하고 있음

###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가. 층간소음 피해 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 자료를 토대로 소음이 신청인 주거 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고자 함

### 4. 판 단

- 층간소음도 평가결과 직접충격 소음도가 주간 33.5dB(A), 야간 24.2dB(A) 및 시간당 최대소음도가 2회로 수인한도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